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20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대식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16.
3. 회부연월일 : 2024. 10.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대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재직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내대학·대학원의 채용후보자까지 입학 자격을 확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u>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u>사내대학형태의</u>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③ 제1항에 따른 <u>사내대학형태의</u>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제32조(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 ----- ----- <u>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u>사내대학·대학원 형태의</u> ----- ----- -----. 1. ~ 5. (현행과 같음) 6. <u>해당 사업장,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산업별 협의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u> ③ ----- <u>사내대학·대학원 형태의</u> -----

현행	개정안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④ 제1항에 따른 <u>사내대학형태</u> 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u>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u> ----- ----- -----.
⑤ 제1항에 따른 <u>사내대학형태</u> 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u>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u> ----- ----- ----- ----- -----.

사내대학은 기업이 설치·운영하는 학력인정(전문학사, 학사) 평생교육기관으로 현재 8개의 사내대학¹⁾이 운영 중에 있음.

개정안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이 가능해질 경우 기술환경과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해 인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기업 맞춤형 석사·박사 수준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사업장에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²⁾이

1) 삼성전자공과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KDB금융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2023년 12월 20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사내대학원 규정 >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교육비용의 부담, 운영 및 폐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종업원”은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본다.

[법률 제20033호(2024. 1. 16.)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월 16일까지 유효함]

동법 제4조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경영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평생교육법」에는 석·박사 과정에 대한 사내대학원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³⁾.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2) 의안번호 제2125998호

3) 「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석·박사급 인재를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대학원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규정한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효력은 2027년 1월 16일까지이므로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